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5년 7월 1일(충청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05년 7월 4일

다. 상정일자 : 2005년 7월 13일(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심상결 복지환경국장)

가.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 등의 심의를 위한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안 제3조),

-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임기중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해촉할 수 있고(안 제4조 및 안 제5조),
-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소집할 수 있고(안 제7조),
-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전문가, 관계인,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출석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안 제8조),
-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담당과장, 서기는 사회복지담당사무관으로 하는 것(안 제9조) 등임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종갑)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회복지 위원회를 설치하고,
-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여성복지와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정책관의 당연직 위원 포함 여부, 위촉위원의 요건중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가 제외된 사유, 서기인 “사회복지 관련 담당사무관”의 구체적인 의미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첨부서류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며, 행정부지사, 복지환경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3.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사회복지에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자
5.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천한 자
7. 기타 도지사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 위원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7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정기회는 연 1회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때 개최한다.

④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에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건의 및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계기관·단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회복지 관련 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 2인 이상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사회복지위원회)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제15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이하 “시·도”라 한다)에 사회복지 위원회를 둔다

②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3.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자
5. 제7조2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
6. 공익단체(비영리 지원법에 규정한 단체)에서 추천한자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모금법 제14조)에서 추천한자

④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의3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여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방법 및 제출시기)

⑤ 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 받은 시·군·구 복지계획을 종합·조정하여 법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이하 “시·도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한 후 이를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의3 (지역복지계획의 수립시기 및 변경)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4년마다 시·도복지계획 또는 시·군·구복지계획(이하 “지역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되 그 수립연도는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4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에의 평가변경)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의6의 규정에 따라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복지계획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지역사회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